

< 정 오 표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

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17.01.19

3. 주요 정정사항 :

- 미설정 퇴직연금클래스(C-P1) 삭제
(퇴직연금감독규정상 파생상품에 40%이상 투자 가능한 펀드는 퇴직연금펀드로 운용할 수 없음)
-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투자신탁재산의 매매평가이익 유보)
-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
-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변경사항 반영
- 투자대상 추가(환매조건부 매수)

[규약]

| 항 목 | 정 정 전 | 정 정 후 |
|----------------|---|--|
| 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 |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~2. (생략) 3. <신설> | ① (현행과 동일)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 1~2. (현행과 동일) 3. <u>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 |
| 제33조(이익분배) |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<u>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</u> 1. <u>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</u> ② (생략) ③ <신설> |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<삭제> ② (현행과 동일) ③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'0'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</u> 1. <u>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/u> 2. <u>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</u> |

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

| 항 목 | 정 정 전 | 정 정 후 |
|-----|-------|-------|
|-----|-------|-------|

| | | |
|--|---|---|
| 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 | - | - <u>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 |
| 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| 가. 투자대상 <신설> | 가. 투자대상 <u>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)</u> |
| 제2부.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,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|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(최근 결산일 기준)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12.65% 수준이므로 유리자산운용(주)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다소 높은 수준인 3등급 (다소 높은 위험) 으로 분류합니다. 추후 매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 |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(최근 결산일 기준)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12.16% 수준이므로 유리자산운용(주)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다소 높은 수준인 3등급 (다소 높은 위험) 으로 분류합니다. 추후 매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 |
| 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|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|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u>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</u> |
| 제2부.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|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 <신설> |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 <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> <u>2017년 1월 19일 이후 매년 결산·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(다만,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·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·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u> |
| 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| - | <u>최근 결산일 및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등에 관한 사항 | | |
| 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| 라. 운용자산규모 | 라. 운용자산규모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|

[간이투자설명서]

| 항 목 | 정 정 전 | 정 정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Ⅱ. [1]. 4. 운용전문인력 | - |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|
| Ⅱ. [1]. 5. 투자실적 추이 | - |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|
| Ⅱ. [2]. 2. 투자위험 등급 분류 |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(최근 결산일 기준)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12.65% 수준이므로 유리자산운용(주)은 실제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다소 높은 수준인 3등급 (다소 높은 위험) 으로 분류합니다. |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(최근 결산일 기준)한 투자신탁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12.16% 수준이므로 유리자산운용(주)은 실제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6등급 중 위험이 다소 높은 수준인 3등급 (다소 높은 위험) 으로 분류합니다. |